

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8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8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8. 30

(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대리답변 지역개발과장 이창희

나. 제안사유

-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수리계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관리하여 왔으나,
- 2002. 12. 26, 2003. 1. 1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,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, 농어촌정비법 제 108조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3조제1항 항목중 법 제43조제1항 →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1항
- 제11조제4항 항목중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 → 농어촌정비법 제 108조제4항 및 제5항
- 관계법령 :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시행규칙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훈)

- 본 조례는 2002. 12. 26, 2003. 1. 16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,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,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제1항, 제4항, 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

을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

-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